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8 선고 2019나653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8 선고 2019나6538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9가단30575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한♡조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

담당변호사 김민재

피고, 피항소인 1. 한▲형

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최이선

2. 유♣길

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가단305751 판결

변 론 종 결 2020. 7. 24.

판 결 선 고 2020. 8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 한▲형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감만동 3-510 임야 1,730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원고에게, 피고 한▲형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. 12. 30. 접수 제103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유♣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피고 한▲형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증여 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, 9, 12,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, ②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1987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사용·수익하고 있는 반면, 피고 한▲형은 해외에 거주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, 원고와 피고 한▲형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.

나. 판단

갑 제10, 1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컨테이너와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, 원고는 위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위 천막 내부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,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·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,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·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59 판결). 더군다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위와 같은 사용·수익은 비교적 일시적인 것으로 쉽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점, 이 사건 임야의 지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한▲형이 당장 이 사건 임야를 사용·수익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한혜진 판사 강현준